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 김가윤\*

그 동안 ICT 분야에서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네거티브 방식,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2018년 10월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우선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법령이 부적절하거나 미비 혹은 모호한 경우 특례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시적인 실증(실증특례의 경우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도 포함)과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와 개별 법률 간의 정합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허가 취득에 대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 박스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목 차

- 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과정 및 의의 / 2
- I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개별 법률 단위 비교 / 3
  - 1. 규제 신속확인 제도 / 4
  - 2. 임시허가 제도 / 5

- 3. 실증특례 제도 / 7
- III. 샌드박스 심사 절차 및 주요 성과 / 8
  - 1. 규제 샌드박스의 심사 절차 / 8
  - 2.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 / 9
- IV. 결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 11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043)750-2622, kayoon@kistep.re.kr

## 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과정 및 의의

국내에서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처럼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2018년 10월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이 우선 통과되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19년 4월 1일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함), 4월 17일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이 완비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경과하고 있다.

〈표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

|    | 일자          | 진행 내용                        |
|----|-------------|------------------------------|
| 입법 | 2019.01.17. |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        |
|    | 2019.04.01. | 개정 금융혁신법 시행                  |
|    | 2019.04.17. |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
|    | 2019.07.17.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    | 2020.03.1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
| 집행 | 2019.02.11. | 산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 2019.02.14. | 과기정통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
|    | 2019.04.17. |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지정          |
|    | 2019.04.25. |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경과보고 및 보완점 발표 |
|    | 2019.07.16. |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경과보고 및 보완점 발표  |
|    | 2019.07.24.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
|    | 2020.01.23.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

자료: 저자 작성

- 1) 동 입법안은 ① 현재 4대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샌드박스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운영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의7 제1항 및 제38조 제5항), ② 대인피해 및 재산피해에 따른 책임보험 미비사항 보완(안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자료 보완 및 반려규정 명시(안 제11조의3 제3항, 제11조의4 제5항)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대체로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뒤늦게 제도를 완비하였지만, 전 산업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에 걸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소비자, 정부 등 각 개별 주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 효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가 가능해지고,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모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여러 편의와 편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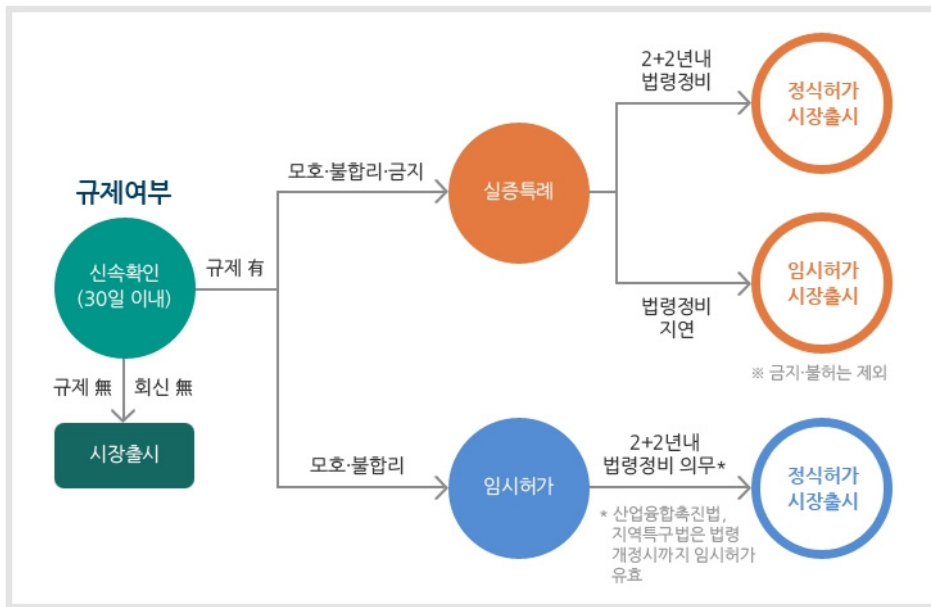
셋째, 정부 차원에서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토대로 추후 세밀한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도출되는 스마트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샌드박스를 통한 성과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추후 관련 기업들까지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I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개별 법률 단위 비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은 규제 신속확인 제도,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세 가지이다(그림 1 참조).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서 각각 개별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법률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프로세스



자료: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1. 규제 신속확인 제도

먼저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신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혹은 허가가 필요한지 등의 여부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신속처리',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규제 신속확인', 지역특구법에서는 축약하여 '규제확인' 등 다소 다른 용어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 지역특구법 제85조 제7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두 법과 상이한 절차적 특징이다.

각 법에서의 규제 신속확인 제도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표 2〉 개별법상 규제 신속확인 제도 절차 비교<sup>2)</sup>

| 구분                      | 주요내용   |
|-------------------------|--|
| 정보통신용<br>합법<br>(제36조)   | 신청인(사업자)이 과기부장관에게 신속처리 신청 → 과기부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 관계기관장은 30일 이내 회신(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절차 포함) → 과기부장관이 관계기관장의 회신이나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 신청인은 관계기관장의 허가등이나 임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규 기술·서비스 출시  |
| 산업융합촉<br>진법<br>(제10조의2) | 산자부 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신청 → 산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에 통보(또는 직접 처리) →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회신(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절차 포함) → 산자부장관은 신청자에 회신 내용 즉시 통보  |
| 지역특구법<br>(제85조)         | 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규제확인 요청 → 시·도지사 권한 범위 외인 경우 중기부장관에게 제출(시·도지사 권한 범위 내인 경우 직접 확인) → 중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의견 회신(자료 보완기간 미산입) → 중기부장관이 회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확인 요청인(사업자)에게 즉시 통보<br>※ 중기부장관은 두 개 이상 부처의 회신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확인요청인(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

자료: 저자 작성

## 2. 임시허가 제도

다음으로 임시허가 제도는 안전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제품 및 서비스의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 허가를 부여하여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법 모두 각 법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임시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다면 즉시 정식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계부처에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를 부여하여, 임시허가 부여 기간 만료 후에도 관련 법령이 마련이 지연되는 때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안전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2) 조항 전문은 부록 참조

반면,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제37조 제6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법령 정비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융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임시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돌연 불법으로 판단되어 사업자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임시허가 지속성 측면에서의 형평성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현재 동 3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지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보통신융합법 상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3법 모두에서 신제품·신서비스 등의 활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개별법상 임시허가 제도 주요 내용 비교

|           | 정보통신융합법(제37조)   |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5)  | 지역특구법(제90조)   |
|-----------|---|--|---|
| 신청요건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b>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b>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b>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b>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b>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b>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b>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 |
| 조건부 임시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 임시허가 유효기간 |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 좌동   | 좌동  |
| 연장요건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

|              | 정보통신융합법(제37조)   |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5)  | 지역특구법(제90조)   |
|--------------|---|--|---|
| 법령 정비 의무     |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b>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함</b>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을 정비하여야 함</b> |
| 법령 미비 시 후속조치 | (관련 내용 없음)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
|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실책임), 책임보험 가입 의무(단서)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단서)   |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실책임), 책임보험 가입 의무 미규정  |

자료: 저자 작성

### 3. 실증특례 제도

실증특례는 개발단계의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존재하여 사업화가 제한되는 경우에 신청을 통해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마찬가지로 2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규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실증 테스트 등을 거친 신제품·서비스가 안전성이 입증되면 실증특례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 마련된 경우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표 4〉 개별법상 실증특례 제도 주요 내용 비교

|           | 정보통신융합법(제38조의2)   |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   | 지역특구법(제86조)   |
|-----------|---|---|---|
| 신청요건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r>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r>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r>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조건부 승인    | ○   | X   | ○(지역, 기간, 규모 등의 제한)   |
| 임시허가 유효기간 |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 좌동  | 좌동  |
| 연장요건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 (요건 없음)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

자료: 저자 작성

### Ⅲ. 샌드박스 심사 절차 및 주요 성과

#### 1. 규제 샌드박스의 심사 절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기 원하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 분야는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청 과제의 특성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핀테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다.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기업과 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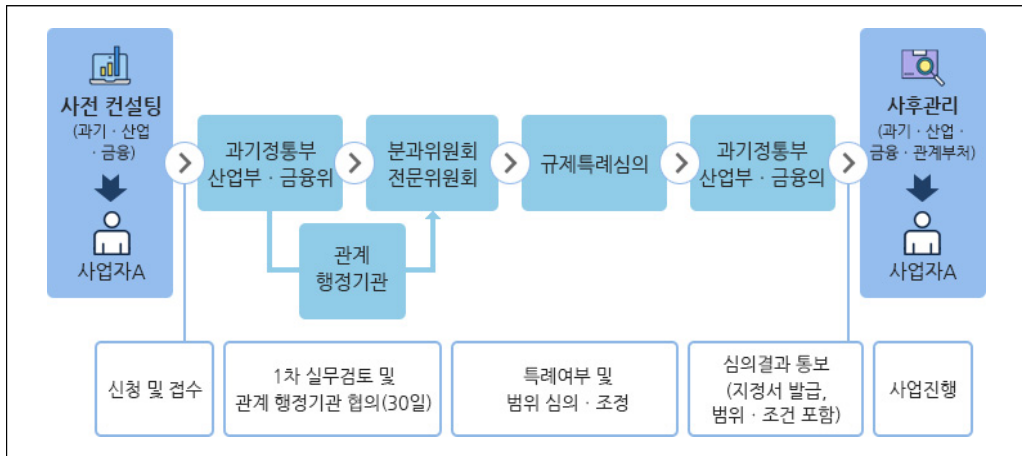


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쟁점을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 후 각 분야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지역혁신 분야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해당 제안을 받은 시·도지사(비수도권)는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규제 샌드박스 심사 절차



자료: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2.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도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신속확인 제도를 두고 있는 영국이나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하여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접수부터 심사에 이르는 과정이 평균 50일 정도 소요되어 영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에서 평균적으로 180일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특히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100

건 대비 2배에 가까운 195건을 법률 시행 1년 만에 승인하였다.<sup>3)</sup> 해당 승인 과제들은 실증특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시허가 21건, 적극행정<sup>4)</sup>이 16건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승인기업 217개 기업 중 137개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술별 승인 건수를 보아도 115건이 APP 기반 서비스이고, IoT 23건, 빅데이터 19건, 블록체인 14건, VR 10건, AI 5건 등 ICT가 접목된 최신 신기술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13개 시도에서 14개의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였는데, 디지털헬스케어는 강원도, 자율주행자동차는 세종, 친환경자동차는 전북, 에너지 신산업은 전라남도,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울산, 블록체인은 부산, 무인선박은 경상남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및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까지 활발하다.<sup>5)</sup>

3)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현황은 과기정통부의 ICT 융합이 40건, 산업부의 산업융합이 39건,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이 77건, 중기부의 지역혁신이 39건 등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1.23.

4) 적극 행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구굴절 검사에 대하여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자신 또는 자녀에 대한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5) 예컨대,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중국 베이징에 11대, 필리핀에 20대 등을 수출하였으며, 배달통의 오토바이 광고는 55개국에 특히 출원을 하였다.

## IV. 결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1년 사이의 핵심 성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샌드박스 제도는 법률상 금지 사항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고, 법령 정비 이전이라도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두는 등 비교적 광범위한 범주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통일된 제도 틀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률 체계상의 정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한계에 대하여 학계 및 연구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하에서는 기존에 제기되어 온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차량 공유서비스와 같이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아예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되더라도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된다는 점, ② 기본적으로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반복 심의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부담 문제, ③ 신청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부재하다는 점<sup>6)</sup>, ④ 이용자 수 또는 지역 제한 등의 부가 요건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sup>7)</sup> 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⑥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보장 절차 미비로 인하여 특례기간 혹은 임시허가 이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의 존재<sup>8)</sup> 등이 지적되었다.

6) 이재훈·정희영(2019),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 261호, p.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해당 내용은 전문가 회의(2019.12.30.), 기업 만족도 조사(2019.11.14.~22.), 규제혁신포럼(2020.1.9.) 등을 통해 수렴한 제도적 보완 사항에 해당한다.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1.23., 7쪽.

8)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 제13항과 지역특구법 제90조 제9항의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정보통신융합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샌드박스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별 법률 간의 정합성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허가 취득에 대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실증특례 제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시허가로 의제한다든가 혹은 후속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현행과 같이 단순히 ‘법령 정비 착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조치를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적 요소의 내포 가능성에 대한 고려 또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기대 효과와 실제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규제 개선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1.23.  
이재훈·정희영(2019),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26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

<부록>

<표 5> 개별법상 규제 신속확인 제도의 비교표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b>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b></p> <p>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b>30일 이내</b>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b>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b></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p> | <p><b>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b></p> <p>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b>30일 이내</b>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b>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b></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p> | <p><b>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b></p> <p>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b>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b></p> <p>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b>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b>하여야 한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b>30일 이내</b>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안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b></p> <p>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p> |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p> <p>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p> |         | <p>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lt;후 략&gt;</p> |

〈표 6〉 개별법상 임시허가 제도 비교표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b>제37조(임시허가)</b></p> <p>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p> <p><b>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b></p> <p>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b>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b>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b>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b>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b>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b></p> <p>〈중 략〉</p> <p>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b>2년 이하의 범위</b>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p> | <p><b>제10조의5(임시허가)</b></p> <p>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b>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p> <p>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b>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b>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중 략〉</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b>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b>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b>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b></p> | <p><b>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b></p> <p>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b>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p> <p>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중 략〉</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원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p> |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b>1회 연장</b>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이 정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p> <p>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이 정비된 경우 자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b></p> <p>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b>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b>책임보험</b>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p> <p>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b>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b>하여야 한다.<br/>(후 략)</p> | <p><b>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b></p> <p>1. 사업실시계획서<br/>2. 해당 산업 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br/>3.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br/>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br/>(중 략)</p> <p>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b>2년 이하의 범위</b>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b>1회 연장</b>할 수 있다.<br/>(중 략)</p> <p>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b>법령 정비에 착수 하여야 한다.</b></p> <p>⑬ <b>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b><br/>(후 략)</p> | <p>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p> <p>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b>임시허가에 조건을 불일 수 있다.</b><br/>(중 략)</p> <p>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b>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b>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b>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b>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b>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b><br/>(중 략)</p> <p>⑩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후 략)</p> |



〈표 7〉 개별법상 실증특례 제도 비교표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b>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b></p> <p>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p> <p><b>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b></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b>2년 이하의 범위에서</b>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b>1회에 한정하여 연장</b>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p> | <p><b>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b></p> <p>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p> <p><b>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p> <p><b>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b></p> <p>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b>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b>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p> | <p><b>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b></p> <p>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p> <p><b>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b></p> <p><b>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b></p> <p><b>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p> <p>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원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p> |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p>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원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b>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b><br/> <b>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b><br/> <b>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b><br/> <b>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b><br/> <b>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b><br/>         &lt;후 략&gt;</p> | <p>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원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b>규제특례심의위원회</b>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p> <p><b>1. 사업실시계획서</b><br/> <b>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b><br/> <b>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b><br/> <b>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b><br/> <b>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b><br/> <b>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b></p> <p>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b>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b><br/>         &lt;중 략&gt;</p> | <p>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b>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b></p> <p>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b>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br/>         &lt;후 략&gt;</p> |

|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구법 |
|---------|--|-------|
|         | <p>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후 략〉</p> |       |